

대학 부설연구소 운영 및 평가지침

제정 2005.11.23 개정 2013. 8.23
개정 2011. 3. 1 개정 2019. 1.28
개정 2013. 3. 1 개정 2019. 7.22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대학 부설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소의 구분) ① 자체승인연구소는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연구소의 설립과 폐쇄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하여 총장의 승인으로 활동하는 연구소를 말한다.

② 법인승인연구소는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설립, 활동하는 연구소를 말한다.

제3조(연구소의 설립기준) ① 연구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분야가 본 대학의 연구목적과 방향에 적합하여야 하며,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.
2. 독립적인 연구소로 발족될 필요성(대외 연구비 획득, 대외 위상의 격상, 공동연구 활성화 및 별도 설립의 필요성 등)이 있어야 한다.
3. 전임교원 5인 이상이 참여 및 일정액의 수탁연구비 확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.
4. 사업계획이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실천성이 있어야 한다.
5. 연구소의 자체적 경비조달 및 운영능력(인건비 및 연구소 운영 공간 등 자체해결 가능)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인승인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추가로 다음 설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 하도록 한다. (개정: 2019. 7.22)

1. 법인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 (개정: 2019. 7.22)
2.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 행정부서 및 정규직 직원 존치 필요성 (개정: 2019. 7.22)
3. 독립된 건물 보유 가능성 (신설: 2019. 7.22)
4. 기타 법인 이사장이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(신설: 2019. 7.22)

③ 연구소의 설립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신설: 2019. 7.22)

1. 신청서류 제출: 설립계획서 1부(별지서식 1)
2. 심의 및 승인

가. 자체승인연구소: 연구산학위원회의 심의(설립요건 및 신청 내용 심사)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나. 법인승인연구소: 연구산학위원회 심의(설립요건 및 신청 내용 심사)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제4조(연구소 평가) ① 연구소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.

1. 자체지원연구소: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며 그 결과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적인 연구소 운영을 도모한다.
 2. 외부지원연구소: 위탁기관의 사업 중단 및 협약기간 종료로 결정될 경우에는 연구소 자동폐쇄를 원칙으로 하되, 정산 및 필요기간은 인정한다. 단 유지 요청시 연구산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② 연구소 평가 시기는 설립 후 3년째 되는 해부터 2년 주기로 일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차년도 3월부터 적용한다.
- ③ 연구소 평가기간은 해당 평가시기로부터 이전 2년으로 한다.
- ④ 연구소 평가위원회는 연구산학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연구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 단 필요시 위원회가 추천한 평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⑤ 연구소 평가항목 및 평가표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부설연구소 운영보고서를 평가대상연구로부터 접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, 평가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평가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에 적용한다. 각 호에 대한 평가는 평가표에 기재된 정량적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정성적 평가를 병행한다.
1. 기능 및 조직, 연구여건, 운영 및 관리: 35%
 2.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: 45%
 3. 대학발전과의 연계: 20%
- ⑥ 연구소 평가결과의 적용은 다음 표와 같다.

평가등급	취득점수	결과의 적용
A	88점 이상	우수연구소(연구장려비 지원 가능)
B	70-87점	연구소 유지
C	56-69점	2회 연속시 폐쇄: 1년후 재평가 (부서운영비 지원 제한)
D	55점 미만	폐쇄 또는 통합

제5조(연구소 기타사항) ① 연구소 폐쇄 시 운영비 집행잔액은 대학에서 흡수하고,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원소속으로 이관한다.

- ② 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, 사무용 비품 등의 자산은 대학에 귀속된다.
- ③ 연구소 폐쇄 및 통합시 소장은 소속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의 잔여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
이 규정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8월 2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2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(별지 서식 1) 부설연구소 설립계획서

포항공과대학교

부설연구소 설립 신청서

연구소 (센터) 명	국문 : 영문 :
설립형태	법인승인연구소 () 대학승인연구소/외부기관협약 () 대학승인연구소/대학 공동연구목적 발의 ()
신청자	학과(부) (인)
신청일자	년 월 일
설립요청일	년 월 일

1. 설립계획서
2. 연구업적서(연구소장)
3. 관련 학과(부) 주임교수(학부장) 의견서
4. 교수참여 동의서
5. 공간사용 동의서
6. 참여연구자의 연구활동 및 실적

○○○연구소 설립계획서

1. 설립목적

-
-

2. 설립배경 · 필요성

-
-
-

3. 연구 및 사업 영역

-
-
-

4.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

-
-

(단위: 천원)

예산확보(수주)처	년	년	년	년	년	합 계
합 계	0	0	0	0	0	0

5. 운영계획

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, 조직운영, 재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.

○ 연구

- ▶
- ▶
- ▶

○ 조직 운영

- ▶
- ▶
- ▶

○ 재정

▶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
-

6. 참여교수 및 연구원 현황

○ 참여교수

소 속	직 급	성 명	비고

○ 참여연구원

소 속	직 급	성 명	비고

--	--	--	--

7. 향후 발전계획

○ 연구

-

-

-

○ 재정

-

-

-

○ 인력

-

-

-

8. 기대효과

9. 기타 요청사항

연구업적서(연구소장)

※ 최근 3년간 주요 연구업적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 학과 주임교수 의견서

○ 설립 배경 및 필요성

○ 설립 후 연구소 활성화 전망

- 연구인력

- 연구비 및 재정확보 전망

- 연구실적 향상을 통한 대학의 Global 경쟁력 강화 전망

○ 기존 또는 설립 중인 연구소와의 중복성 여부

○○○ 학과(부) 주임교수(학부장)

(인)

교수참여 동의서

_____ (연구소 설립 목적 등) _____ 하고자 설립 추진 중인 ○○○연구소에 참여코자 동의합니다.

201

소 속	직급	성명	서명 (날인)

참여연구자의 연구활동 및 실적

※ 최근 3년간 주요 연구업적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